

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번 호	118-0
-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 .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금고 지정 방법 ⇒ 경쟁방법
 - 수의계약 단서 조항 규정 (제1항 1~3호)
 - 일반회계 1금고 지정, 특별회계 및 기금 별도 금고 지정(제2항)
 - 금고 약정기간 지정 ⇒ 3년(제3항)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- 위원회 구성 ⇒ 위원장 포함 7인이상 9인이하
 -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⇒ 임기, 기능, 위원의 임무, 회의 등
-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
-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, 2007.6.1)

4. 의안전문 : 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없음

- 첨 부 : 1) 기타 참고자료(법령 등)사본 1부.
2) 입법예고사본1부.
3) 회계별 금고지정 현황 1부.

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시 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제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 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금고지정) ① 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
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(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)

3.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,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.

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.

제4조(금고 지정기준)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거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시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
2.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위원은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활동기간은 금고약정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,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6조(금고 지정절차) ①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3월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, 「은행법」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지정기준에 의거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·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금고 약정)** ①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,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의무,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부담 및 수수료, 계약해지, 계약 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제8조(금고약정의 중도해지)** ①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- 제9조(금고운용 보고)** ①금고는 일반·특별회계(기금 포함)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·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,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제10조(수당지급 등)**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금고약정은 그 만료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금 고 지 정 평 가 기 준 (제4조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비고
총 계		100	
	소 계	35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 조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10	
	- 국외 평가기관	6	
	- 국내 평가기관	4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5	
	- BIS 자기자본비율	9	
	- 자기자본 이익률	6	
	- 무수익 여신비율	7	
	- 대손충당금 적립율	3	
	소 계	18	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
	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4	
	다. 공금예금 적용금리	5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
	소 계	19	
3. 지역주민이용 편 의성	가. 관내지점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5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9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5	
	소 계	18	
4. 금고업무 관리능 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	
	다. 전산처리능력	5	
	라. OCR센터 운영계획	3	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	소 계	10	
	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	5	
	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5	

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- 제77조 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,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7.6.28 대통령령 제20123호]

- 제102조 (금고업무의 약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,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,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[행정자치부예규 제 240호]
(2007. 6. 1)

제정 2006. 5. 24.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(재정정책팀-3035, '06.5.25)

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행 정 자 치 부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1. 총 칙

① 목 적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자치단체”라 한다.)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.

② 용어의 정의

① 금고(지방재정법 제77조)

-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.)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.

② 일반회계(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)

-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.

③ 특별회계(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)

- 『지방공기업법』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.

④ 기금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)

-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『지방자치법』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함.

⑤ 금고지정

-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.

⑥ 금고약정

-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.

③ 적용 범위

-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.
-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④ 금고의 수

- 일반회계 : 1금고 지정(단일금고)
- 특별회계 : 1금고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.
예) A특별회계- 갑은행, B특별회계 - 을은행, C특별회계-병은행
- 기금 :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.
예) A기금- 갑은행, B기금 - 을은행, C기금-병은행
※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특정 상품에 예치하여야 함

⑤ 금고의 약정기간

-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.
-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.

2. 금고지정 방법

① 개념

-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(隨意)방법이 포함되며
 -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·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
 - 수의방법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

② 금고지정 방법

- 금고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음,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함.
 - 가.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 - 나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 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 - 다.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라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)
 - 마.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

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

-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첨>의 기준으로 평가함.
 - 가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0)
 - 나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
 - 다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5)
 - 라. 금고업무 관리능력(15)
 - 마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(10)
 - 바.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- 기타사항 (15)
- <별첨>의 기준 중 항목 6(기타사항)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.
 - 가. 항목 6에 자치단체 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(예시1 참조)
 - 나. 항목 6을 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(15점)을 항목 1, 2, 3,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(예시2 참조)
 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.
 -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.
 -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
 - 다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순위 간 점수편차는 1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점수편

차는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(예시2 참조)
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는 순위 간 점수편차가 0.5점을 초과할 수 없음

예시 1) 항목 6을 정하는 경우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
6. 기타사항(15)	6. 기타사항(15) - 항목 가. 000(5) 나. 000(5) - 세부항목 다. 000(5)

예시 2)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
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)	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) - 1순위 6.0점, 2순위 5.0점, - - - , 최저순위 3.6점)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	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- 1순위 6.0점, 2순위 5.5점, 3순위 5.0점, - - - , 최저순위 3.6점)

예시 3)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
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점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0) - BIS 자기자본비율(7) - 무수익여신비율(7) - 자기자본이익율(6)	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5점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5) - BIS 자기자본비율(9) - 추가배점 - 무수익여신비율(7) - 자기자본이익율(6) - 대손충당금적립율(3) - 항목추가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점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)	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8점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)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3) - 항목추가 ※ 추가배점 불가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5점) 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)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5)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5)	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9점) 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)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9) - 추가배점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5)
4. 금고업무 관리능력(15점)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5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5)	4. 금고업무 관리능력(18점)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5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5) 라. OCR센터 운영계획(3) - 항목추가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(10) 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(5) 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(5)	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(10) 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(5) 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(5) ※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

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

- 지역실정,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

③ 「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」 관련 유의사항

가.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

-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
 -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야 됨

<법제처 유권해석('02.5.31)>

-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

나.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

-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,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후 처리

다. 「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」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

-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
 -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.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

4. 금고의 지정절차

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함)를 두어야 함.
 - *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-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함.
 - 가.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
 -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·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나.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음.
 - 다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, 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함.
- 심의위원장 선정, 심의위원수,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

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 하여야 함.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③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

-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,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④ 금고의 지정

-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함.

5. 금고약정 및 해지

① 금고약정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.
-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의무,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부담 및 수수료, 계약해지, 계약 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
② 금고약정의 해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.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.

6. 보 척

① 금고운용보고

-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·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.
-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.

② 조례 등 위임

-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 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.

7. 행정사항

- 이 지침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I. 총괄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 - 무수익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 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6점)	(10) (20)	30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(6) (5) (4)	15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. 지방세입금 납부면의 증진방안	(5) (5) (5)	15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5) (5) (5)	15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	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(5) (5)	10
6. 기타사항	자치단체 추가항목	15	

II.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30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·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
- 평가방법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 -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(20점)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 - 다만,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자치 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- (1)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
 - (2) 무수익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
 - (3)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6점)
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(15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(6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 -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(예-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%인 경우 4.4%이상)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(5점)

-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 -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(예-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%인 경우 1.2%이상)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
- ※ 『금융기관의 여·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』 폐지('04.2월)로 금융기관의 금리가 자유화 됨.

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 (4점)

-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(15점)

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(5점)

-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- 특히,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가능
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(5점)

-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(5점)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(전자납부 등) 증진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15점)
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(5점)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-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(5점)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(5점)

-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계획(안)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(10점)

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(5점)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으로 평가함

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(5점)

-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-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·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 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※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의 배점은 균등하게 배분·평가

6. 기타사항 (15점)

- 자치단체 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다른 항목에 추가배점 및 추가항목을 정하는 경우 세부항목별 추가배점 및 추가항목을 균등배분

예시) 세입의 금고계좌이체 소요기간, 금융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 등

※ 기타항목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 예시

예시) 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

 - 총자산이익률, 대손충당금 적립율, 리스크관리현황 등
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분

 -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, 정기예금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등
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

 - 금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전반 대책,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 계획 등

4. 금고관리업무 능력 부분

 -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

제천시 공고 제2007 - 1021호

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들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07년 8월 3일

제 천 시 장

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금고 지정 방법 ⇒ 경쟁방법
 - 수의계약 단서 조항 규정 (제1항 1~3호)
 - 단일금고 지정 원칙, 특별회계 및 기금 별도 금고 지정(제2항)
 - 금고 약정기간 지정 ⇒ 3년(제3항)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- 위원회 구성 ⇒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
 -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⇒ 임기, 기능, 위원의 임무, 회의 등
-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4일 까지 제천시장(참조 세무징수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-5587, FAX 641-5599 담당자 : 염복철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

의견제출자	제출 의견		조치 내용					
신한은행	가. 의견내용 - 조례안 제3조2항(금고지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영 					
제천지점 (제천시 명동 4-16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례안(입법 예고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 제출(반영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조(금고지정) ① (생략) ②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,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조(금고지정) ①(현행과 같음) ②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 고,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.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조례안(입법 예고)	의견 제출(반영)	제3조(금고지정) ① (생략) ②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,	제3조(금고지정) ①(현행과 같음) ②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 고,	--.	--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자치부 예규(2007.6.1)에서는 일반회계는 1금고(단일금고)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지정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행정자치부 예규(제 240호)에 따름.
조례안(입법 예고)	의견 제출(반영)							
제3조(금고지정) ① (생략) ②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,	제3조(금고지정) ①(현행과 같음) ②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 고,							
--.	--.							
나. 별표항목의 제3항 「지역주민이용 편의성」 중 「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」 배점이 100점 만점 중 9점으로 과도하므로,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또는 선진세정시스템 운영계획 등에 점수를 추가 배점 요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반영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최근 지방세입금 수납기피 현상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 비중을 두어 지방세입금 수납을 적극 유도 하고자 함.</p>						

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

의견제출자	제출 의견						조치내용
	항 목	세 부 항 목	당초 조례안	의견 제출	수정 조례안	반영 여부	
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(명동 1-1)	1. 금융기관 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정성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5	26	26		반영
		- BIS 자기자본비율	9	9	9	0	
		- 자기자본 이익률	7	3	6	반영	
		- 무수익 여신비율	6	7	7	반영	
		- 대손충당금 적립율	3	5	3	미반영	
		- 순수국내자본 비율		2	0	미반영	
		소 계	18	15	18		
	2. 시에 대 한 대출 및 예금금리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6	6	0	
		나. 자치단체 대출금리	4	4	4	0	
		다. 공금예금 적용금리	5	5	5	0	
	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0	0	미반영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18	20	18		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5	5		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	5	5			
	다. 전산처리능력	5	5	5			
	라. OCR센터 운영계획	3	3	3			
	마. 금고관련 BM특허 및 정보보호 인증실적		2	0	미반영		

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

의견제출자	제출 의견		조치내용				
검토자 의견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조례 안(입법예고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수정 안(행자부 예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10px;"> 제3조(금고지정)① (생략) 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3. (생략)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"> 제3조(금고지정)①(현행과 같음) 1. _____ _____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. _____ _____ 경우로서,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(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) 3. (현행과 같음)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조례 안(입법예고)	수정 안(행자부 예규)	제3조(금고지정)① (생략) 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3. (생략)	제3조(금고지정)①(현행과 같음) 1. _____ _____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. _____ _____ 경우로서,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(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) 3. (현행과 같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영 - 조례안 제3조(금고지정) ①항의 단서 규정의 각 호를 행정자치부 예규(제 240호)에 맞게 보완하여 단서규정의 각 호를 명확히 함
조례 안(입법예고)	수정 안(행자부 예규)						
제3조(금고지정)① (생략) 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3. (생략)	제3조(금고지정)①(현행과 같음) 1. _____ _____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. _____ _____ 경우로서,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(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) 3. (현행과 같음)						

자치단체 금고지정 현황

■ 제천시 금고지정 현황

회계명	금융기관명	계약기간	비고
합계	3개	2006.1.1~2008.12.31(3)	
일반회계	농협중앙회제천시지부	2006.1.1~2008.12.31(3)	수의계약
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	신한은행제천지점 (구조흥은행)	2006.1.1~2008.12.31(3)	"
주택사업특별회계	국민은행제천지점	2006.1.1~2008.12.31(3)	"

■ 충청북도 및 인근 자치단체 금고지정 현황

기관명	금융기관명	계약기간	비고
충청북도청	농협중앙회	2005.1.1~2007.12.31(3)	수의
청주시	농협중앙회 청주지점	2005.1.1~2007.12.31(3)	경쟁
충주시	농협중앙회/신한/국민	2007.1.1~2009.12.31(3)	경쟁
음성군	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	2006.1.1~2008.12.31(3)	수의
청원군	농협중앙회청원군지부	2006.1.1~2008.12.31(3)	수의
단양군	농협중앙회단양군지부	2005.1.1~2007.12.31(3)	수의
원주시	농협중앙회/신한	2007.1.1~2009.12.31(3)	제한경쟁
영월군	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	2005.1.1~2007.12.31(3)	수의
영주시	농협중앙회/대구	2005.1.1~2007.12.31(3)	수의